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건설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입장 등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확정, 의결했다.

##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 [1] 추진경위 및 계획

건설업계는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선진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부실이라는 전근대적 관행을 척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97년 공공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제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면허·계약·시방기준 등 건설관련제도의 국제화, 발주기관의 능력제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삼풍사고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부실방지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7월 공무원 및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제도 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분야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대책은 앞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 주요제도개선 실적

① 설계단계: 설계감리제 도

입, 턴키공사 활성화, 부실 설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② 입찰·계약단계: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제·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정부노임단가 폐지

③ 시공단계: 부실시공업체·기술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하자 보수책임기간 연장, 공사보험가입 의무화

④ 하도급제도: 부대입찰제 확대 실시, 하도급대금 직불제·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

⑤ 감리단계: 책임감리제 도입, 감리원의 책임·권한 강화, 감리시장 조기 개방

⑥ 사후관리단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설안전기술공단 설립

**[2] 건설산업과 제도의 문제점**

**1]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분야의 취약과 기술수준의 낙후**

건설산업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사업의 참여와 70년대말 이후 해외건설진출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시공회사 중심으로 발전되어 설계·감리 등 용역분야가 취약하다.

특히 대규모 복합공사를 효과적으로 종합조정·관리하여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능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3] 시공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및 고용체계**

건설공사는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의 1단계 하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탁·노무공급·품매기 등의 불법 재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체계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도 결여되어 있어 공사현장에서 시방규정·품질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실책임도 묻기 어렵다.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노령

**4] 우량 적격업체 선정과 부실 부적격업체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급한도액,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적격심사 낙찰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확실적인 운영으로 개별공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한 제재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의 예와같이 적격심사낙찰제를 발전시켜나가고 보증보험과 감리 등에 의하여 부실업체가 배제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국제적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제도와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설계·시방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주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이 개방될 경우 클레임이 대상이 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발주

건설투자 증가추이

(90불변, 10억원, %)

	1960	1970	1980	1990	1994
건설투자	606	3,310	12,706	39,605	50,637
GNP 비중	5.6	13.3	16.8	22.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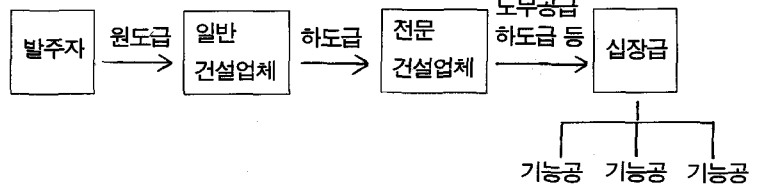
**2] 감리 등 기술인력의 부족**

전체적으로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하며, 건설업체의 양적 증가에 따라 기술자격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특히 감리분야 및 안전진단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책임감리제의 정착과 설계·감리분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화와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으로 부실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복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감리분야 및 안전진단 전문인력

	수요	공급(부족율)	대상확대시(부족율)
감리	10,600명	9,000명(15%)	12,800명(30%)
안전진단	4,000명	1,600명(60%)	6,000명(73%)

자가 전문능력을 갖지 않으면 공사의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발주자의 전문성과 공사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발주자·시공사·설계자·감리자 등 건설주체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과 시방서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시설물안전관리상의 문제**

급근초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마련한 바 있으나 60년대 이후 건설된 각종 노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폭적인 유지·보수 투자의 확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철강재 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품질관리대책이 필요하다.

**[3] 대책의 기본방향**

입찰·계약·설계·감리·하도급 등 지금까지 추진한 부실방지 대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공분야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설계·감리·사후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기술자·기능공·자재 등 건

설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발주자·시공사·설계자·감리자·보증회사 등 건설주체가 시장기능에 따라 상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교량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작업의 추진 및 시행과정에서 현장근로자·업체·학계·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건설현장에 까지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마련된 대책은 개혁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4] 주요 추진대책**

**1]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1) 건설산업을 기획·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여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활동에 관하여 동 기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도시가스업 등 개별법에 시공자격만 규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전문건설업면허로 흡수한다.

전기·통신공사 등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종은 공정관리상 안전에 문제가 크다고 인정한 경우 일괄발주할 수 있도록 그 의무규정을 완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을 건설관련법에 정의하고 공공부문에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시공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관련법상의 신고·등록·허가·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자격자를 고용하여 설계 등 해당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건설공사 「현장실명제」도입과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정비

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 종사자가 실명화되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포함한 종사자가 표시된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현장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건설업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대금의 수령 등의 보호를 받고 부실시공을 초래한 때에는 자격정지 등의 제재도 부과한다.

유사공종을 통합하여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면허의 2종 초과 중복보유 금지제한을 완화한다.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분리시공이 어려운 공사는 하나의 전문업체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면허 2종 초과 중복취득 제한을 완화하는데,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건설업법시행령에 규정한다.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평가규정을 제정하고,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경쟁제한요인이 되는 특수건설업면허를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전문건설업(철강재, 준설,

조경)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3) 부실업체 배제를 위한 제도 정비

#### ① 공사완성보증(Surety Bond)제도 도입

현행 시공 연대보증인제도와 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도는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고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전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하도급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위하여 희망업체에 한하여 실시중인 신용평가제를 오는 97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②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

부실설계 및 감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외에 경제적 배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배상한도를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③ 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

나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담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일원화하여 강력히 규제한다.

④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자정활동 강화, 민방위교육의 적극 활용 등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실관련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자율적인 윤리활동을 강화한다.

### (4) 건설주체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① 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다.

국가계약법·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 및 각종 계약서상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과 우위의 규정을 정비하고, 96년까지 12종의 표준시방서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불명확한 기준도 명확화하며 현행 품셈기준 적산방식을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으로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②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건설업과 관련된 분쟁조정·중재기능을 수행하는 건설분쟁

중재원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 중재인단을 두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연금과 기타 건설업계의 출연금 그리고 중재수수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

(1) 대학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건설인력 수급대책 추진

① 대학의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인력을 배출하고, 대학원에 대하여도 일정율로 지속적으로 증원토록 유도한다.

② 건설기술자 배출 확대와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한다. 이와관련 자격종목을 세분화하고 이에따라 시험과목도 조정을 하며 시험내용을 이론위주에서 실무위주로 전환한다. 학력·경력자의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기술자격자 구인난을 해소한다. 감리원의 학력·경력자 인정확과를 확대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여도 96년 상반기중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력·경력자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③ 건설기술자 관리를 위하여 건설인협회로 하여금 학력·경력·참여공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데이

타 베이스(D/B)를 구축한다.

④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회사를 활용하여 국내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한다. 공사금액의 규모보다

는 공사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기준으로 책임감리대상공사를 50억원 이상 모든 공종에서 50억원 이상 PQ 공종으로 조정한다. 감리협회에 감리전문고

## 각종 制裁處分권한 地方廳위임

올해부터 土木 및 建築工事業 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의 專門建設업종 영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면허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데 이어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에 대한 각종 制裁處分권한도 지방으로 위임된다.

29일 建設交通部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양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土木 및 建築공사업 면허에 대한 전문건설업 의무 경력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해 올 상반기중 개정될 건설업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에 의해 올 하반기중 실시(11월 예정)될 신규면허부터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면허에도 土木業(토목건축공사업)처럼 이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 般건설업면허신청자격에 경력의무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土木공사업을 비롯한 建築공사업, 特殊건설업, 住宅건설업, 住宅造成業 등 관련 건설업을 30개월이상 영위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사업 免許라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은 현재 경력의 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建交通部는 또 면허개방에 따라 건설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올부터 - 般건설업자와 特殊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등 制裁處分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키로 했다.

따라서 免許貸與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건설업체를 제재처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建交通部는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건설업 신규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실시해오고 있다.

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이수자에게 감리원자격을 부여하고,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 종사자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홍보하여 외국감리전문회사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⑤설계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술인력 수요를 감축한다. 설계서와 준공도면등을 전산화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데 주요 공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순 반복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각종 표준도를 전산화한다. 설계·발주·견적·설계변경·공정관리·공사대금의 지급·준공 등 건설공사수행과정 전반을 전산화할 수 있는 건설업무종합전산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2)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육성

①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설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와 공제금 등의 합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칭 「건설근로자 복지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시연구단」을 구성하도록 가칭 「실시연구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복지카드제도의 종합관리업무는 기존의 공제조합이 담당하고 복지카드에 기능공의 경력·자격

증·현장별 근무기간 등을 기재한다. 기능공을 고용하는 건설회사는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금충당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공제조합이 기능공 개인별 공제금을 종합관리해서 기능공이 건설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건설업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복지재원은 건설업체 부담금과 공제조합·전문공제조합의 출연금 등으로 하되,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업훈련분담금과 고용보험료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복지재원 출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한다.

②직업훈련분담금 등 건설업체에 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한다.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제도를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분담금이 건설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③건설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를 도입한다. 심장·도목수 등은 기능도도 높고 건설현장 경험이 풍부하나 필기시험 부담으로 기능공자격 취득이 어렵다. 기능자격이 있더라도 철강재용접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기능수준을 별도로 검정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자격검정 위탁기관은 국방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다.

④건설노임의 상승과 숙련공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공의 기계화, 자재의 표준화와 조립공법의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업체·자재업체·장비제조관련업체 등이 시공의 기계화와 공법개발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한다. 현재 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한 건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2001년까지 3%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1)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①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

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한다.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장기계약공사의 2차 이후 계약과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

관한과 책임에 비해 능력과 기술이 크게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규제위주의 도급한도액 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도로 전환

건설업자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폐지하되 발주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토록 한다. 공공부문에는 각 발주기관이 공시된 시공능력을 참고하여 제한군 편성 또는 업체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이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시공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건설업체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공사발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전자재를 포함한 건설관련업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전산화하여 공사발주업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건설업체의 정보관리기구는 건설협회나 공제조합에 대행토록 하는 방안과 순수민간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충실한 설계와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

①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전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될 조사항목과 내용에 관한 기준,기후(혹서 또는 혹한 등)를 고려한 공종별 적정공기 산정기준 등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규정한다.

②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계속비 편성이 곤란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이월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③ 동일 사업내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시설비, 용지보상비, 감리비간의 예산전용권을 각 중앙관서장에게 위임을 확대한다.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설계변경 개념에서 제외하여 공사집행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96년 상반기중 행정지시한다.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제 구축

(1)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체계개선

① 현장배척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미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한다.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콘크리트 공사시에는 이동식 레미콘생산설비 설치·이용을 권장한다. 레미콘 재료인 골재·시멘트·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배합방식을 검토하여 도입한다.

② 철강재·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하도록 하는 「공장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한다. 설계시방서에 인증받은 공장에서의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철강재구조물공사는 인증받은 공장을 보유한 업체나 이와 공동으로 도급을 받도록 한다.

③ 전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시방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KS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 기준을 정비하고 신자재에 대한 KS 기준을 제정한다. KS 표시품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공업진흥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의 중지 등 처벌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한다. 유통중인 건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에 자재가 반입될 경우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성과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④공사의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감리자·현장 기술자 배치기준을 공종의 특성이나 난이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건설공사 품질보증체계 구축**

①국립건설시험소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인증 기능을 확충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대 실시한다. 국립 건설시험소 등 관련 연구기관이 건설관련 ISO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심사원 양성 등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공사 PQ시 ISO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한다.

②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

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대형교량·소각로·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되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3) 건설자재산업의 육성과 표준화·정보화 추진**

①시용비중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자재를 표준화 우선대상으로 정하고 95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95년 28개 품목에 이어 2000년까지 10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표준규격자재 생산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 및 세계·금융지원을 통하여 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96년중 200억원)과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표준화사업 전담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②발주기관, 건자재 생산업체, 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건설자재 종합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어음이나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는 표면금리와 금융기관의 실제 할인금리의 차액을 별도로 추가 지급

토록 의무화하고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지연시의 지연이자는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현금 또는 어음, 채권 등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분, 준공분)은 발주시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지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하도급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한다.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하고 설계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며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부구조의 불법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5] 추진계획 및 일정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p>※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에 대한 기본사항의 법제화</li> <li>-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li> <li>-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도입</li> <li>- 전문건설업면허 중복보유 제한 완화</li> <li>- 하도급계열화 우수업체 평가기준 제정</li> <li>- 저가하도급심사기준 마련</li> <li>- 특수건설업면허를 전문건설업으로 전환</li> <li>- 공사완성보증제도 도입</li> <li>-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li> <li>- 건설관련 각종 계약서 및 시방서 정비</li> <li>-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li> <li>- 건설분쟁중재원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법·도시가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96년중)</li> <li>-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 개정(96년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기 제정(95년10월)</li> <li>- 발주기관별로 시행(96년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국가계약법·건설공제조합법 개정(97년이후)</li> <li>-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개정(97년이후)</li> <li>- 계약서정비실무작업단 구성·운영(96년 상반기)</li> <li>- 회계예규개정(96년 3월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ul>
<p>※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관련 대학 및 대학원 증원</li> <li>- 건설기술자 배출 확대</li> <li>- 감리인력 양성</li> <li>- 책임감리대상공사 조정</li> <li>- 건설기술자 D/B 구축</li> <li>- 설계의 전산화 시행</li> <li>- 건설근로자 복지카드 제도 도입</li> <li>- 직업훈련분담금 등 경감</li> <li>-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li> <li>- 기술개발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자료 작성·배포(96년5월)</li> <li>-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96년중)</li> <li>- 감리협회에 감리전문 교육과정 설치</li> <li>-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96년중)</li> <li>- 경력신고 입력·관리(96년12월 건설기술인협회)</li> <li>- 전산화 연구 및 전산시스템 연구(96년중)</li> <li>- 각종 표준설계도서의 전산화 추진(97년중)</li> <li>- 실시연구단 구성·운영(96년중)</li> <li>- 직업훈련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령 개정(96년중)</li> <li>- 국가기술자격법 개정(96년중)</li> <li>- 신기술지정제도 운영훈령 마련(95년12월)</li> <li>- 투자재원조달계획 수립(96년4월)</li> </ul>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

<p>※ 공사시행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공사 발주제고 개선</li> <li>-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li> <li>- 건설업체에 관한 종합정보전산화 추진</li> <li>- 예산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개정(96년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예산회계법령 개정(96년중)</li> <li>- 건설공사시행절차 제정 (96년중)</li> </ul>
<p>※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배척플랜트 확대</li> <li>- 레미콘의 건식공법 도입</li> <li>- 철강재에 대한 공장인증제 도입</li> <li>- 건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li> <li>- 감리자,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li> <li>- 품질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li> <li>- 국립건설시험소의 ISO인증기관 지정</li> <li>- ISO인증업체에 대한 PQ시 가산점 확대</li> <li>-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 도입</li> <li>- 건설자재 표준화</li> <li>- 건설자재종합정보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레미콘 생산시설 설치 지침 개정(96년중)</li> <li>- 관련지침마련(96년중)</li> <li>-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96년중)</li> <li>- 건설기술관리법 개정(96년중)</li> <li>-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개정(96년중)</li> <li>- 건설기술관리법 개정(96년중)</li> <li>- 96년중</li> <li>-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관련 규칙 개정(96년중)</li> <li>- 국가계약법 개정(96년중)</li> <li>- 표준화사업전담반 설치(96년 상반기)</li> <li>- 건설자재종합정보화 마스타 플랜 작성(96년 상반기)</li> </ul>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p>※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사 대금의 현금지급</li> <li>- 공사대금 지급절차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치(96년3월)</li> <li>-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감리업무수행지침(96년중)</li> </ul>
<p>※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p> <p>※ 대책에 대한 점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강화</li> <li>-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li> <li>- 다중이용시설의 시공능력심사제 도입</li> <li>- 공동주택 내부구조의 불법변경 억제</li> <li>-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95년12월30일)</li> <li>-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96년초)</li> <li>- 건축법시행령(95년12월30일)</li> <li>- 건설업법개정(96년중)</li> <li>- 주택건설촉진법 개정(96년중)</li> <li>- 추진평가단 구성·운영(96년중)</li> </ul>